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어선안전조업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어선안전조업법」이 「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(‘24.1.2.)되어 “어선원의 안전·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”(제4장의2, 총 22개 조항)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“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”을 “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”으로 함(제명 변경)
- 나. “어선안전조업법”을 “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”로 함(안 제1조~제2조 개정)
- 다. 법률 제3조에 따라 상시어선원 5인 미만 어선에 대하여 제4장의2 “어선원의 안전·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”(총22개 조항) 적용을 제외함(안 제3조 개정)
- 라. “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(시행계획)”을 “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(시행계획)”으로 함(안 제4조~제5조 개정)
- 마. 법 제27조에 따라 어선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정함(안 제14조 신설)
- 바. 법 제30조에 따라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할 정보

- 및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(안 제15조 신설)
- 사.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직업성 질병자의 수를 2명으로 정함(안 제16조 신설)
- 아. 법 제36조에 따라 어선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, 심의·의결 사항, 위원 구성 등을 정함(안 제17조~제22조 신설)
- 자. 법률 제48조 및 제51조에 따라 재정지원 사업, 권한 위임,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 등에 어선원 안전·보건 관련 사항 추가(안 제23조~제25조 개정)
- 차. 신설된 “제4장의2 “어선원의 안전·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”(총22개 조항)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[별표5] 개정(안 제26조 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'25년 예산에 어선원 안전·보건 관리체계 구축사업 21억원 반영되었음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”을 “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어선안전조업법」”을 “「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「어선안전조업법」”을 “「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단서에서 “어업지도선,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”이란”을 “단서에 따라”로, “어선을 말한다”를 “어선에 대해서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 각 호 외의 어선임에도 불구하고 상시 어선원 5명 미만인 어선에 대해서는 법 제4장의2(법 제26조부터 제47조까지)에 따른 어선원의 안전·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.

제4조의 제목 “(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수립 등)”을 “(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어선안전조업기

본계획”을 “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”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 등)”을 “(어선안전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”을 각각 “어선안전 등에 관한 시행계획”으로 한다.

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고,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(어선관리감독자의 업무) 법 제27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1. 어선 내 법 제27조에 따른 어선관리감독자(이하 “관리감독자”라 한다)가 지휘·감독하는 작업(이하 이 조에서 “해당작업”이라 한다)과 관련된 기계·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·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
2.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어선원의 작업복·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·사용에 관한 교육·지도
3.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어선원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
4.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·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·감독
5. 법 제28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
가. 유해·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
나.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

6.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제15조(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」 제6조에 따른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
2. 어선원재해 발생에 관한 정보
3. 어선원 안전·보건에 관한 정보
4. 그 밖에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

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이나 그 밖에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

제16조(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대상)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어선”이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을 말한다.

제17조(어선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)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어선안전보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해야 하는 어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2조1의3호에 따른 어선원재해가 1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어

선

2. 법 제2조1의4호에 따른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

②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은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어선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소유자에게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어선소유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9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에게 보고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.

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) 어선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법 제28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어선원재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1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8명 이내로 구성한다.

1. 어선소유자
2. 어선관리감독자
3. 어선소유자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어선원(선장·기관장·어로장

중 제2호와 중복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)

4. 어선원대표(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어선원 중에서 선출한다)

5. 어선원대표가 지명하는 3명 이내의 어선원(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)

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인원수와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인원수는 같은 수로 구성하고,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제20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1. 개최 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
3. 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

제21조(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의결 정족수 부족 등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사항

2.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, 어선소유자와 어선원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.

제22조(회의 결과 등의 공지) 위원회의 위원장은 어선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선내 게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어선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.

제23조(종전의 제14조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6조제1항”을 “법 제48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안전사고”를 “안전사고와 어선원 재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어선”을 “어선과 어선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안전사고”를 “안전사고와 어선원재해”로 한다.

제24조(종전의 제15조)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9조”를 “법 제51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법 제27조제1항”을 “법 제49조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2항) 제2호 중 “법 제32조제1항제3호”를 “법 제58조제4항제3호”로, “제2항제1호·제2호·제4호”를 “제5항제1호·제2호·제4호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9조”를 “법 제51조”로 한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·시행 명령
 2.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심사·보완 명령
 3. 법 제39조에 따른 어선의 선체등에 대한 시정조치, 작업중지, 작업 중지의 해제
 4. 법 제41조에 따른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에 대한 조업 또는 항행 중지 명령, 어선원 대피 명령,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
 5.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
 6.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, 제4항제4호·제5호·제6호·제7호·제8호, 제5항제6호 및 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
- 제25조(중전의 제16조)제1항 중 “제29조”를 “제51조”로, “어선안전종합 관리시스템”을 “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 및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”으로 한다.
- 제26조(중전의 제17조) 중 “법 제32조제3항”을 “법 제58조제7항”으로 한다.
- 별표 5 중 “(제17조 관련)”을 “(제26조 관련)”으로 한다.
- 별표 5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항포구	<u>법 제58조</u> <u>제5항제1호</u>	90	150	300

에 출입한 경우				
나.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항한 항포구 인근에 있는 신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8조 제5항제2호	90	150	300
다.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교신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8조 제4항제1호	150	250	500
라.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지한 경우	법 제58조 제4항제2호	150	250	500
마.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하지 않은 경우	법 제58조 제5항제3호	90	150	300
바.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업지도선, 함정 또는 안전본부로부터 위험 및 대피신호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58조 제4항제3호	150	250	500
사.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	법 제58조 제5항제4호	90	150	300
아.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8조 제5항제5호	90	150	300
자.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	법 제58조 제5항제6호	90	150	300
차.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어선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8조 제4항제4호	300	400	500
카.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지 않은 경우	법 제58조 제4항제5호	10 (1개소당)	30 (1개소당)	50 (1개소당)

은 경우				
타.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	법 제58조 제5항제6호	5	10	15
파.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·시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58조 제3항	500	750	1,000
하.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어선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	법 제58조 제4항제6호	50	250	500
거.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	법 제58조 제4항제7호 (어선소유자)	200	300	500
	(어선원)	5	10	15
너.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58조 제4항제8호	50	250	500
더.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중 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(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어선소유자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어선원중대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)	법 제58조 제1항	3,000	3,000	3,000
러. 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중대 발생 원인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(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어선소유자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어선원중대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)	법 제58조 제2항 (보고하지 않은 경우) (거짓으로 보고한 경우)	700 1,500	1,000 1,500	1,500 1,500

<u>며.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석요구</u> <u>에 따르지 않거나 어선 또는 그 밖의 사</u> <u>업장 출입을 거부·기피·방해한 경우,</u> <u>장부나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거</u> <u>나 거짓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</u> <u>또는 거짓 진술을 한 경우</u>	<u>법 제58조</u> <u>제6항</u>	<u>100</u>	<u>150</u>	<u>200</u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5 제2호 사목부터 자
 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</u>	<u>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</u> <u>시행령</u>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 <u>어선안전조업법</u> 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</u> 」----- -----.
제2조(조업한계선 등) ① 「 <u>어선안전조업법</u> 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”이란 별표 1에 따른 선을 말한다.	제2조(조업한계선 등) ① 「 <u>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</u> 」----- -----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3조(적용제외) 법 제3조 단서에 서 “ <u>어업지도선,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</u> ”이란 다음 각 호의 <u>어선</u> 을 말한다.	제3조(적용제외) ① --- 단서에 따라 ----- ----- ----- <u>어선에 대해서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.</u>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제1항 각 호 외의 어선임에도 불구하고 상시 어선원 5명

제4조(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5조(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기관별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(이하 이

미만인 어선에 대해서는 법 제4장의2(법 제26조부터 제47조까지)에 따른 어선원의 안전·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.

제4조(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-----
-----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어선안전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-----

어선안전 등에 관한 시행계획-----

-----.

② -----

어선안전 등에 관한 시행계획-----

조에서 “기관별 작성권자”라 한다)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③ 기관별 작성권자는 제2항에 따라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기관별 어선 안전조업시행계획(이하 이 조에서 “기관별 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④ ~ ⑦ (생략)

<신설>

-----.

③ -----

----- 어선 안전 등에 관한 시행계획-----

-----.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어선관리감독자의 업무)

법 제27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1. 어선 내 법 제27조에 따른 어선관리감독자(이하 “관리감독자”라 한다)가 지휘·감독하는 작업(이하 이 조에서 “해당 작업”이라 한다)과 관련된 기계·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·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

2.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어선원의 작업복·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·사용

<신 설>

에 관한 교육·지도

3.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어선원
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
한 응급조치

4.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·정
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
·감독

5. 법 제28조에 따라 실시되는
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
목의 업무

가. 유해·위험요인의 파악에
대한 참여

나.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
참여

6.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
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
제26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
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
항

제15조(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
시스템 구축·운영 등) ① 해양
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
에 따라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
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
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
같다.

<신 설>

<신 설>

1. 「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」 제6조에 따른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
 2. 어선원재해 발생에 관한 정보
 3. 어선원 안전·보건에 관한 정보
 4. 그 밖에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
-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이나 그 밖에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
- 제16조(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대상)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어선”이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을 말한다.
- 제17조(어선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)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어선안전보건위원회(이하

<신 설>

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해야 하는 어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2조1의3호에 따른 어선
원재해가 1년 이내 2회 이상
발생한 어선

2. 법 제2조1의4호에 따른 어선
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

②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은 어선
원재해가 발생한 어선이 제1항
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
당 어선소유자에게 위원회를 구
성·운영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
어선소유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
부터 1개월 이내에 제19조에 따
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해양
수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
다.

④ 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제3항
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에
게 보고 한 날로부터 1년으로
한다.

제18조(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)
어선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
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·
의결을 거쳐야 한다.

<신 설>

1.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어선
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에
관한 사항

2. 법 제28조에 따른 위험성평
가 실시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어선원재해 재발 방
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1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
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8명
이내로 구성한다.

1. 어선소유자

2. 어선관리감독자

3. 어선소유자가 지명하는 2명
이내의 어선원(선장·기관장
· 어로장 중 제2호와 중복되
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)

4. 어선원대표(제1호부터 제3호
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어선원
중에서 선출한다)

5. 어선원대표가 지명하는 3명
이내의 어선원(제1호부터 제4
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으로 한다)

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
의 인원수와 같은 항 제4호 및
제5호의 인원수는 같은 수로 구

<신 설>

<신 설>

성하고,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
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제20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위
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
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
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,
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
다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
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
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
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
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
갖추어 두어야 한다.

1. 개최 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
3. 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

제21조(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
처리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
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어선
원안전감독관에게 중재를 요청
할 수 있다.

1. 의결 정족수 부족 등으로 위
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사항
2.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

	<u>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</u> ② <u>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, 어선소유자와 어선원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22조(회의 결과 등의 공지) 위</u> <u>원회의 위원장은 어선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선내 게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어선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.</u>
<u>제14조(재정지원)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</u> <u>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.</u> 1. 어선 <u>안전사고</u>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2. 어선 안전장비 및 설비의 보급 지원 3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선 <u>안전사고</u>의 예방 및 대응을	<u>제23조(재정지원) -----</u> <u>----- 법</u> <u>제48조제1항-----</u> <u>-----.</u> 1. --- <u>안전사고와 어선원재해</u>----- <u>-----</u> 2. <u>어선과 어선원</u> ----- <u>-----</u> 3. ----- <u>-----</u> <u>안전사고와 어선원재해-----</u>

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
원

제15조(권한의 위임) ① 해양수산
부 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다
음 각 호의 권한을 어업관리단
장에게 위임한다.

1. (생 략)

2.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업
허가 등의 취소나 정지 요청
<신 설>

--

제24조(권한의 위임) ① -----

----- 법 제51조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법 제49조제1항-----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
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
지방해양수산청의 장에게 위임
한다.

1.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
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·시
행 명령

2.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어선
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심사·
보완 명령

3. 법 제39조에 따른 어선의 선
체등에 대한 시정조치, 작업중
지, 작업중지의 해제

4. 법 제41조에 따른 어선원중
대재해가 발생한 어선에 대한
조업 또는 항행 중지 명령, 어
선원 대피 명령, 조업 또는 항

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.

1. (생략)

2. 법 제32조제1항제3호, 같은 조 제2항제1호 · 제2호 ·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· 징수

제16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해양수산부장관(법 제19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법 제19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·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

행 중지의 해제

5.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

6.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, 제4항제4호 · 제5호 · 제6호 · 제7호 · 제8호, 제5항제6호 및 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· 징수

③ ----- 법 제51조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법 제58조제4항제3호-----
-- 제5항제1호 · 제2호 · 제4호 -----

제25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-----
제51조-----

-----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 및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-----

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. ② (생 략) <u>제17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</u> <u>32조제3항</u>에 따른 과태료의 부 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.	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<u>제26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</u> <u>58조제7항</u>----- -----.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389